**‘연서회’ 동아리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동아리 명칭]**

본 동아리의 명칭은 “연서회(硏書會)”로 한다.

**제 2조 [목적]**

서예와 캘리그라피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두 활동을 하면서 자아성찰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동아리 소재]**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

**제 4조 [임원진의 임기]**

1.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홍보부장으로 정의한다.
2.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조 [임원진 선출 방식]**

임원진의 선출은 선임 회장의 임명으로 선출된다.

**제 6조 [임원진]**

1. 회장은 동아리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3. 총무는 재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4. 홍보부장은 동아리 홍보, 행사 기획, 포스터 제작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모든 임원진은 임기중 학기를 등록한 숭실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 7조 [집행부]**

1. 집행부는 임원진으로 구성되며,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동아리 대표자 회의 참가 및 의결권  
   2. 예산집행 승인권  
   3. 징계 발의권  
   4. 회칙개정 발의권  
   5. 기타 중요안건에 대한 발의권  
   6. 일반, 긴급 사항에 대한 즉결권  
   가. 일반 사항이라 함은 본회 자체 행사 및 기타 일반 업무를 말한다.  
    나. 긴급사항이라 함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나 빠른 시행이 요구되는 사안을 말한다.
2. 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 8조 [집행부 회의]**

집행부 회의는 임원진 합의 하에 임의로 진행한다.

**제 3장 회원**

**제 9조 [회원 자격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등록한 모든 이를 구성원으로 한다.
2. 본회에 등록한 회원은 활동회원(신입회원, 재학생), 비활동회원(휴학한 회원)으로 구분한다. (휴학을 하지 않았지만, 활동회원이 아닌 자는 “유령회원”이라 칭한다)
3. 본회에 입회한 해당 학기동안 “신입회원”으로 정의한다. 그 이후론 “재학생”으로 정의한다.
4. 전시회가 임박한 기간에 입회한 회원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신입회원”으로 구분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회비의 일부만 납부하고 당 학기의 나머지 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그 “회비의 일부”는 임원진이 결정한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기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본회의 회원은 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장부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8. 모든 활동회원은 서예수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임원의 판단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9. 모든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에 작품을 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임원진의 동의를 얻은 회원은 예외로 한다.
10. 모든 활동회원은 DP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단, 임원의 판단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11. 모든 활동회원은 품평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임원진의 판단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가입]**

1.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2. 본회의 가입은 입회원서를 모두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본회의 가입원서 작성은 반드시 임원진과 대면으로 작성한다.

**제 11조 [회원의 탈퇴]**

1. 본회의 탈퇴는 회원이 임원진에게 통지(대면 또는 서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회원의 입회원서 등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는 탈퇴 후 1년간 보관한다.
3. 탈퇴 후 회비의 환급은 하지 않는다.

**제 4장 모임**

**제 12조 [정기 서예수업]**

정기 수업은 매주 1회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제 13조 [정기 캘리그라피 스터피]**

정기 캘리그라피 스터디는 매주 1회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제 14조 [DP 작업]**

1. 전시회를 준비하는 작업을 “디스플레이 작업(이하 DP)”이라 정의한다.
2. DP작업은 전시회 시작일보다 하루 전에 진행한다.

**제 15조 [전시회]**

1. 전시회는 매 학기당 한 번씩 가진다.
2. 전시회는 모든 이에게 공개된다.

**제 16조 [품평회]**

1. 품평회는 회원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다같이 감상하는 행사이다.
2. 품평회는 전시회 마지막날 진행한다.
3. 품평회는 본회의 회원 및 졸업생만 참석할 수 있다.

**제 17조 [총회]**

1. 총회는 개강총회, 종강총회로 구분한다.
2. 개강총회에서 회장은 아래의 항목을 발표 및 공지한다.  
   1. 임원진 소개  
   2. 학사일정 발표(수업, 전시회, MT 등)  
   3. 회비 공지
3. 종강총회에서 회장은 아래의 항목을 발표 및 진행한다.  
   1. 해당학기 장부 공개 및 결산보고  
   2. 회칙 개정 투표 진행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시행)

**제 5장 재정**

**제 18조 [수입]**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

**제 19조 [회비]**

1.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해당 년도 임원진이 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예활동을 못하는 경우라도, 동아리방 시설 및 비품(사물함 등)을 사용할 경우 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서예 작품을 출품하지 않았더라도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당 학기 “활동회원”으로 인정된다.

**제 20조 [결산보고]**

회장은 종강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 6장 동아리 등록**

**제 21조 [등록]**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 7장 징계**

**제 22조 [목적]**

활동이 중단되어 동아리 활동에 지장을 주는 회원을 제명함으로써 회원들이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지원을 받게 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동아리활동을 유도하여 내실 있는 동아리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제 23조 [유령회원 제명]**

1. 휴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기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에게 경고가 적용된다. 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에도 동일 조건에서 활동하지 않을 경우, 임원진은 해당 회원을 제명하고, 통보한다. 즉, 연속 세 학기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된다. (휴학생 제외)
2. 제명된 회원은 다시 입회할 수 있으나, “신입회원”이 아닌 “재학생”으로 구분된다.

**제 8장 부칙**

**제 1조 [회칙 발효]**

본회의 회칙은 회장이 공표한 날부터 발효되며 제 22조를 비롯한 모든 항목이 소급적용이 이루어진다.

초판 [2020.03.11]

**제 2조 [회칙 개정]**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전체 활동회원의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 오탈자, 맞춤법 수정에 한하여 임원진이 임의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